

모심과 살림의 정성을 다하는

한살림 생산·출하 기준

한살림 생각을 잘 표현한
'이야기가 있는 물품'을 도시 가족에게 보낸다



한살림운동의 지향

- 우리는 우리 안에 모셔진 거룩한 생명을 느끼고 그것을 실현합니다.
- 우리는 우리가 딛고 사는 땅을 내 몸처럼 생각합니다.
- 우리는 지역의 이웃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 우리는 우주생명의 일원으로서 생태계에 책임지고자 합니다.
-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나부터 시작합니다.

한살림 생산자의 다짐

- 하나** 나는 한살림 생산자로서 풀 한포기, 벌레 한마리까지 모든 생명을 귀하게 모십니다.
- 둘** 나는 한살림 생산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명살림세상을 열어 가는데 앞장섭니다.
- 셋** 나는 한살림 생산자로서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하지 않는 단순 소박한 삶을 지향합니다.
- 넷** 나는 한살림 생산자로서 모든 농사를 생명물질순환원리에 맞는 농업으로 전환합니다.
- 다섯** 나는 한살림 생산자로서 이웃과 함께 생태적인 지역순환 농업을 만들어 갑니다.
- 여섯** 나는 한살림 생산자로서 모든 한살림 회원을 내 가족으로 여깁니다.
- 일곱** 나는 한살림 생산자로서 생명 세상을 가꾸는데 필요한 공부에 전념합니다.
- 여덟** 나는 한살림 생산자로서 전통적이고 건강한 농촌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힘씁니다.
- 아홉** 나는 한살림 생산자로서 지역 자급기반을 높이는 데 앞장섭니다.
- 열** 나는 한살림 생산자로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갈 후계자를 양성합니다.

한살림 농업정책의 기본방향

- 농업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한다.
- 농업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농업의 모습을 만든다.
- 농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 식량 기반의 확보를 도모한다.
- 각국 각지의 기후·풍토에 맞는 농업을 지향한다.
- 유기농업과 환경농업을 지향한다.
- 복합농업, 지역복합형 농업을 지향한다.

물품검토 선정 기준(농업정책축약)

- 안전성과 지역자원순환성을 가장 우선시 함.
- 생산의 계절성, 제철을 중요시 하지만 식생활과 경제적 생산활동을 고려하여 시설재배는(비가림, 하우스, 유리온실, 터널, 멀칭, 수막재배)인정하지만 생육초기(육묘기간) 이외의 가온재배한 농산물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농약(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최대한 배제하고 줄이려는 노력이 담긴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검토`선정함.
- 작물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호르몬제(성장조정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
- 외국 농산물의 범람으로 지속적인 생산이 크게 위협받는 국산 농산물.
- 생산협동체의 조직들을 형성하여 협동적인 노력으로 생산 및 출하하는 물품 우선적으로 선정.

생산·출하기준

공통기준

1. 농지 및 재배포장 관리 기준

- 단기 임차지는 한살림포장으로 부적당하며, 책임 있는 자신의 농지를 준비해야 하며 장기 임차지는 별도로 잘 관리해야 함.
- 합성농약(제초제, 성장조절제 등)은 재배포장이나 논두렁, 밭두렁 등 주변에도 절대 사용 불가
- 생산계획 시 약정된 내용대로 출하 전에 필지, 품목별로 반드시 친환경인증을 얻어야 함.
- 오염원(관행재배 포장 등)으로부터의 오염 예방을 위해 안전지대를 확보해야 함. 상시적인 오염가능성이 있는 곳은 한살림 필지로 부적합(관행재배 과수원, 인삼밭 등이 인접한 필지).
- 오염원(관행재배 포장 등)과 인접 시 이격거리(완충지대) 4m 확보 또는 차단막(높이 1m이상) 설치 의무화(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격거리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공급을 금지한다. 차단막을 설치한 경우,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거쳐 공급한다.)
- 자연적 인공적 시설물로 오염원 차단이 가능할 경우 예외로 인정(높이 1m 이상).
- 오염원(관행재배 포장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관개용수 유입이 없도록 독의 높이와 넓이, 배수로 확보(논둑 높이는 평균 수면 위 20cm 유지 가능하도록 권장).
- 공용 수로에 생기는 오염문제(제초제 살포)는 현재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문제 삼지 않음.
- 용수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는 필지는 구분 관리한다.
- 시설재배 필지는 관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농약 오염 용수 유입 우려가 없는 필지에 대해서는 관정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토양에 잔류된 농약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필지는 2년차까지 출하 전에 잔류농약을 검사하여야 한다.
- 관행 재배와 한살림 약정 재배를 병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한다.

2. 종자와 모종

- 한살림 생산·출하기준이나인증기준에 맞는 종자,상토, 육묘관리를 해야함.
- 육묘 : 자가 육묘 의무화(지역 공동체 공동육묘는 허용하고 자가 육묘 실패 시 사전 협의 후 인증기준에 맞는 모종을 구입하여 사용가능)
- 종자 : 화학처리나유전자변형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해야함(인증 기준에 맞는 종자,모종을 사용해야함).
- 상토 : 가급적자가제조를 권장하고,인증 기준에 맞는 상토를 사용해야함.
- 품종 : 품목별 세부기준에 명기된 한살림 지정 품종을 사용하여야함.

3. 유기재배 퇴비(축분 사용) 기준

- 유기 · 무항생제 축산농장으로부터 유래한 축분 허용.
- 한살림 물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소, 돼지, 산란계, 육계로부터 유래한 축분 허용(무항생제 축산개념).
- 경종과 축산이 결합된(순환이 전제된) 개별생산자(생산자 본인)의 축산으로부터 유래한 축분 허용.
- 지역 순환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는 범위의 우분만 충분히 발효 후 사용가능(한살림 공동체 내, 공동체와 공동체 간 활용가능).
- 축분을 원료로 제조된 공장형 구입 퇴비는 사용금지(단, 진흥청의 유기자재 목록으로 고시된 자재는 예외로 함).
- * 위 모든 사항은 인증기관의 인증허용을 전제하여 진행함

4. 재배방식 기준

- 재배방식별 기준은 기본적으로 인증기관의 기준(인증별 기준)을 준용하고, 한살림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우선시함.
- 채소류(과채, 엽채, 근채류 등)는 인증 기준에 관계없이 유기재배기준 적용(별도로 재배방식이 지정된 품목은 제외함).
- 자주인증 재배는 한살림 금지농약을 제외한 품목별 방제횟수 기준 적용

5. 가격 적용 기준

- 재배방식별, 기간별, 등급별 차등 적용.
- 유기재배 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채소류 등)은 무농약인증과 유기인증 가격차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 생산·출하 기준은 당해 연도 작황에 따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할 수 있음.

당부 드리는 말씀

- 한살림을 지속·발전시켜온 원동력은 생산자, 소비자, 실무자의 신뢰와 믿음입니다. 책임생산, 책임소비의 약속이 잘 이행되도록 중간에서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실무자 본연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생산지가 많아지고 다양화 되면서 생산지의 정보 소통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안 발생 시 사전에 꼭 연락하시어 혼선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생산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면적이나 시기)

재배방식에 변경이 있을 경우(인증 단계의 조정, 저농약의 경우 농약 종류 변경시)

출하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출하시기, 출하량)

수급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결품, 중단, 부족, 적체 등)

물품의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크기, 상태 등)

포장, 운송에 변동이 있을 경우

- 신뢰와 믿음으로 검수 없이 입고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생산·출하기준 주요 개정 내용(2017년~2018년)

구분	내 용		비 고
주 잡 곡	벼	녹미 : 생동찰벼	품종변경
	잡곡	보리 : 찰보리, 메보리(겉보리, 쌀보리) 밀 : 금강, 조경, 얇은뱅이밀 기장 : 메기장제외	보리 내용추가 밀 기준 추가 기준수정
채 소	찰옥수수	얼룩찰옥수수 : 개당 무게 100g 이상 흑찰옥수수 : 개당 무게 70g 이상	
	마/큰동근마	개당 무게 150g 이상	기준 신설 추가
	케일	녹즙용:30cm 이상 / 쌈용:10~20cm	2018년 길이변경
	땅두릅	· 길이 : 13cm~25cm · 연백부는 전체 길이의 (30%~50%) · 미숙, 세어버린 잎 출하 금지	2018년 신설
	깻잎	겨울출하 깻잎 냉해/동해방지를 위한 보온기준 적용 · 외부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경우에 한 해 냉해/동해방지를 위한 보온조치 허용 · 외부온도: 기상청 예보 해당 지역 기온을 기준으로 함. · 생육촉진을 위한 목적이 아닌 냉해/동해로 인한 동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 생산능가는 사용일, 사용시간, 유류(등유) 사용량 등을 기록하여 보고서를 제출 · 조치방법: 알코올, 촛불, 동력팬, 열풍기 등 시설에 따라 조치(신설)	보온기준 문구변경
과 일 채 소	수박	품종 : 타원형계통(삼복골 삭제) · 무게/크기 : - 애플수박 : 대 1.2kg 이상, 중 0.9kg 이상~1.2kg 미만, 소 0.6kg 이상~0.9kg 미만 - 토종흑수박 : 8kg 이상, 7kg 이상~8kg 미만, 6kg 이상~7kg 미만, 5kg 이상~6kg 미만, 4kg 이상~5kg 미만, 3kg 이상~4kg 미만, 2kg 이상~3kg 미만 · 당도 : 9°Bx 이상 정상출하(토종흑수박)	품종기준 변경 애플수박, 토종흑수박 기준 추가 토종흑수박 당도기준 추가
	참외	품종 : 참미소	품종추가
	딸기	· 무게 : 개당 12g 이상 · 신선도 : - 수확 후 포장까지 선도유지	무게기준 변경 예냉기준 추가 당도기준 추가

구분	내 용	비 고
과 일 채 소	딸기 - 3월~4월은 예냉(3시간) 후 입고 ·기타: - 출하당도 9brix 이상 - 냉해/동해방지 및 잿빛곰팡이 억제에 위한 보온기준 적용 · 외부온도가 -1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한해 냉해/동해 방지를 위한 보온조치 허용 · 외부온도: 기상청 예보 해당지역 기온을 기준으로 함. · 생육촉진을 위한 목적이 아닌 과실의 냉해/동해 방지, 잿빛곰팡이 억제를 위함. · 생산능가는 사용일, 사용시간, 유류(등유) 사용량 등을 기록하여 보고서를 제출 · 조치방법: 알코올, 촛불, 동력팬, 열풍기 등 시설에 따라 조치	보온기준 수정
	토마토 · 무게/크기: - 흑토마토: 개당 70g 이상 - 송이방울토마토: 40~90g	무게기준 품목 추가
	메론 백자메론 개당 600g 이상, 하니원메론 개당 800g 이상, 그 외 1kg 이상	품종별무게기준 변경
과 실	사과 재배기준: 살충제/살균제 분리사용 시 9회까지 방제 가능함. · 무게/크기: 사과 규격화 기준 변경 · 포장방법: 벌크출하시 완충패드 3개 이상 사용	기준 변경 기준 신설
	배 재배기준: 살충제/살균제 분리사용 시 8회까지 방제 가능함. · 당도기준: 조 · 중생종 10°Bx 이상, 만생종은 11°Bx 이상	기준 변경
	복숭아 재배기준: 살충제/살균제 분리사용 시 9월 이전 6회 이하, 9월 출하 7회까지 방제 가능함. · 무게/크기: 전품종 190g 이상(조생종은 150g 이상) · 당도기준: 우천시 8°Bx 이상 허용, 가격은 30% 차등적용	기준 변경
	감귤 재배기준: 설감귤류 냉해/동해방지를 위한 보온기준 적용 · 무게/크기: 레몬(80g이상), 한라봉, 레드향 대과기준, 만감류 소과기준 · 당도: 비가림감귤, 만감류 당도기준 신설	기준 신설 기준 추가 기준 신설
	홍시용감(대봉) 살충제/살균제 분리사용 시 7회까지 방제 가능함.	기준 변경
	단감 살충제/살균제 분리사용 시 7회까지 방제 가능함.	기준 변경
	참다래 무농약재배 이상 / 개당 70g 이상 수확시 당도 기준 적용	기준 변경 기준 신설
	자두 살충제/살균제 분리사용 시 품종에 따라 5~8회까지 방제 가능함.	기준 변경
	대추 살충제/살균제 분리사용 시 5회까지 방제 가능함.	기준 변경

구분		내용	비고
과실	매실	청매실 품목별 기준규격 변경	기준 변경
양념채소	양파	조·중생종 양파의 경우 인증취득에 관계없이 유기재배기준 적용 - 건조상태 양호할 것 - 쌍구, 열구, 이형구, 미숙구, 추대 생긴 것 제외	내용 변경(일부 표현 삭제)
	마늘	- 난지형마늘(장아찌용 포함)의 경우 인증취득에 관계없이 유기재배기준 적용	내용 변경(일부 표현 삭제)
기타	저농약 과실류 자주인증 세부기준 외	금지농약성분 개정(8성분 추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3회 이하 사용 - 살충제/살균제 분리사용은 각2회까지 가능하다.(추가) - 수확 후 방제는 방제 횟수 내에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추가)	기준 변경 및 추가

품목별 세부 기준

1 벼

구분	내용	비고
품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벼(전국품종) · 조생종 : 오대, 운광, 운두, 전남 3호 · 중생종 : 화영, 고시히까리 · 만생종 : 추청, 일품, 대안, 일미, 삼광, 신동진(호남지역만 허용) - 찰벼 : 신선, 화선, 상주, 진부, 보석, 백옥 - 흑미 : 찰흑미 - 녹미 : 생동찰벼 	녹미 녹원찰벼에서 변경
재배기준	무농약재배 이상	
수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벼 : 15.5%(메벼 : 13%미만은 수매제외) - 찰벼 : 13%(호화가 되는 조건으로) * 수매 시 기준율을 적용하여 수매량 환산 	
가격구분	<p>이묘작으로 생산되는 조생품종은 중만생종에 비해 5%가격인하 적용 조생벼 가격은 중만생종벼 가격에 8%를 더하여 수매한다(단, 9월 15일 이전 수매만 적용) * 제현율별 벼 수매가격(별첨자료1 참조)</p>	
기타	화건 시 건조기 내부의 온도가 40°C이하에서 건조할 것	

2 잡곡

구분	내용	비고
품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리 : 찰보리, 메보리(겉보리, 쌀보리) - 밀 : 금강, 조경, 앓은뱅이밀 - 메주콩 : 태광, 장엽, 황금, 대원 - 서리콩 : 중만생종 권장(속청태는 제외) - 기장 : 백색과 황색, 홍피색만 가능, 파종 전 색선별(메기장제외) - 차조 : 청차조(메조는 제외) - 수수 : 찰수수(메수수 제외) - 콩나물콩 : 오리알태, 준저리콩 * 지역에서 추천하는 우수 품종, 단 기존 품종과 품위(모양과 형태, 맛 등)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품종 금지 	<p>겉찰보리, 쌀찰보리 수정(2018년)</p> <p>밀 품종명기(2017년)</p> <p>메기장 제외(2018년)</p>
재배기준	무농약재배 이상(단, 유기와 무농약 가격 차등) 국내산 취급 가능(일반잡곡)	
신선도	벌레, 곰팡이 발생된 것 출하 금지	
가격구분	수매등급 3등급(등급 간 가격차 5%, 등외는 별도 협의)	
수분율	<p>밀 : 13%, 보리 : 13.5%</p> <p>* 수매 시 기준율을 적용하여 수매량 환산</p>	
기타	무농약 이상으로 재배한 포장에서 윤작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으로 취급함	

3 과실

3-0. 과실공통

- 제초제 사용을 금지함. 자주인증 저농약재배의 경우에 한살림금지농약과 성장조절제를 사용할 수 없음. 단, 법정전염병의 방제를 위한 경우 협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 (예, 사과, 배 - 화상병)
- 부패과, 변질과, 상해과, 동해과, 과숙과, 미숙과, 이종과, 병충해과(피해가 과육까지 미친 것), 이물이 묻어있는 것은 출하 금지함.
- 출하기준은 당해 연도의 작황에 따라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조정할 수 있음.

3-1. 사과

구분	내용	비고						
재배기준	자주인증 저농약재배 이상, 농약방제는 7회 이하, 단 살충제/살균제 분리사용 시 9회까지 방제 가능함.	2018년 수정						
무게/크기	<p>규격화 (만생종에 한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대</th> <th>중</th> <th>소</th> </tr> </thead> <tbody> <tr> <td>240g~310g미만</td> <td>190g~240g미만</td> <td>190g 미만</td> </tr> </tbody> </table> <p>* 대과 기준은 240g이상 으로 설정하고 당해 작황에 따라 무게기준을 대:중=5:5 비율로 조정 * 선물용 사과 출하기준은 별도 협의 - 홍옥, 시나노레드: 130g 이상 - 아오리, 양광, 천추, 홍월: 170g 이상 - 부사, 복두, 홍로 등: 190g 이상 - 소과 150g이상(조생종은 130g) * 무농약재배는 품종 구분 없이 130g 이상</p>	대	중	소	240g~310g미만	190g~240g미만	190g 미만	2018년 수정 2016년
대	중	소						
240g~310g미만	190g~240g미만	190g 미만						
포장방법	여름사과와 명절용 사과는 완충망 사용 ※ 무농약재배는 여름 사과에만 완충망 사용 ※ 5kg 상자는 비닐포장 사용 벌크출하 시 완충패드 3개 이상 사용	2017년						
신선도	낙과한 것은 출하 금지함(특히 아오리사과) 작은 마른 흠집은 허용							
당도기준	조생종 9°Bx, 중생종 10°Bx, 만생종 12°Bx							
선택기준	중생종 40%, 만생종 30% 이상 * 중생종 시나노스위트 품종은 예외 적용함.	2016년						
출하시기	홍로 품종은 9월말 출하 종료. 양광, 감홍은 10월말까지, 나머지 중생종 품종은 10월 24일까지 출하 완료	2016년						
가격구분	출하시기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함. 품종별 가격은 동일 적용.							
기타	여름 사과는 예냉처리 후 출하. 상온보관 금지 (시설이 없는 생산지는 선풍기를 이용하여 온도조정)							

3-2. 배

구분	내용	비고
재배기준	자주인증 저농약재배 이상, 농약방제는 6회 이하, 단 살충제/살균제 분리 사용 시 8회까지 방제 가능함. 지베렐린 처리 금지	2018년 수정
무게/크기	크기에 따라 등급을 구분 - 추황 원황(5kg) : 대(11개 이하), 중(12~13개), 소(14~15개) - 황금배(5kg) : 대(12개 이하), 중(13~14개), 소(15~16개) - 신고배(5kg) : 대(9개 이하), 중(10~11개), 소(12~14개) * 1상자에 평균과가 80% 이상이어야 함. - 대(3개) : 개당 450g이상(원황 등), 550g이상(신고 등) - 중(5개) : 개당 380g이상(원황 등), 450g이상(신고 등) - 선물용(7.5kg) : 추황 황금(16개 이하), 신고(13개 이하)	2017년
포장방법	꼭지를 제거하고, 완충망 사용	
당도기준	- 조 · 중생종 10°Bx 이상, 만생종은 11°Bx 이상(신품종은 농산물표준규격 '상' 기준 적용) * 1상자 내에 기준 당도 70% 이상일 것 * 그 이하 등외품은 30% 가격 차등 적용	2018년 수정
기타	출하 우선 지역을 두지 않고 생산계획량에 따라 비율을 정하여 출하함. 출하시기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함.	

3-3. 포도

구분	내용	비고
재배기준	무농약재배 이상	
무게/크기	송이 크기는 문제 삼지 않음	
포장방법	1.5~2kg 한 송이, 3~4kg 두 송이를 중앙에 개방하여 포장	2017년 수정
신선도	미숙과, 탈립과, 착색장애과, 짜글짜글한 송이는 출하금지 줄기가 심하게 마른 것은 출하금지	2017년 신설
당도기준	전 품종 13°Bx 이상 *기준미만은 30% 차등가격 적용	당도기준 변경
기타	수량보다는 선별 등 품질유지에 우선을 둠	

3-4. 복숭아

구분	내용	비고
재배기준	자주인증 저농약재배 이상 농약방제는 9월 이전 출하되는 복숭아는 4회 이하, 9월부터 출하되는 복숭아는 5회 이하, 단 살충제/살균제 분리사용 시 9월 이전 6회 이하, 9월 출하 7회까지 방제 가능함.	2018년 수정
무게/크기	전품종 190g 이상(조생종은 150g 이상)	2018년 수정
포장방법	전체 품종 포장 시 완충망 사용 운송 시 상자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포장 상자에 단단한 것 무른 것 표기	
당도기준	전 품종 9°Bx 이상(조생종은 8°Bx적용) * 우천시 8°Bx 이상 허용, 가격은 30% 차등적용	2018년 수정

3-5. 감귤(노지, 비가림, 만감류)

구분	내용	비고	
재배기준	전체: 무농약재배 이상 - 시설감귤류 냉해/동해방지를 위한 보온기준 적용 · 외부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경우에 한해 냉해/동해 방지를 위한 보온조치 허용 · 외부온도: 기상청 예보 해당 지역 기온을 기준으로 함. · 생육촉진을 위한 목적이 아닌 과실의 냉해/동해 방지를 위함. · 생산농가는 사용일, 사용시간, 유류(등유) 사용량 등을 기록하여 보고서를 제출 · 조치방법: 알코올, 촛불, 동력팬, 열풍기 등 시설에 따라 조치	2017년 신설	
무 게 / 크 기	노지/ 비가림	- 노지감귤: 지름 4.9cm~7.3cm - 비가림감귤: 지름 4.7cm~7.3cm - 나머지는 별도처리	2016년
	만감류 외	- 한라봉(200g이상), 천혜향(150g이상), 청견(100g이상) - 진지향(70g이상), 세미놀(70g이상), 청로(100g이상) - 레드향(120g이상), 황금향(120g이상), 세또미(120g이상) - 금귤(10g이상), 레몬(80g이상) - 100g이상 품목의 소과는 별도 협의 - 대과는 구분하여 출하: 한라봉(300g이상), 레드향(300g이상)	2017년 수정
	소과	소과는 정상과와 30% 가격차등 적용 - 한라봉: 150g이상 ~ 200g미만	2017년 신설

구분		내용	비고
무 게 / 크 기	소과	- 천혜향: 100g이상 ~ 150g미만 - 청로: 80g이상 ~ 100g미만 - 레드향: 100g이상 ~ 120g미만 - 이외 품목의 소과는 별도 협의	2017년 신설
	포장방법	출하시 왁스 코팅 금지	
당 도	노지/ 비가림	- 노지감귤: 극조생은 8°Bx, 조생은 9°Bx 이상 - 비가림감귤: 10°Bx 이상	2017년 신설
	만감류 외	- 한라봉: 11°Bx 이상 (산도 1.1%이하) - 천혜향, 진지향, 황금향, 레드향, 청로, 세토미 11°Bx 이상 - 금귤: 11°Bx 이상 - 세미놀, 청견: 10°Bx 이상 - 나머지는 별도처리	2017년 신설
기타		에틸렌, 아세틸렌 등을 사용한 인위적인 후숙처리 금지	

3-6. 그 외 과실류

구분		내용	비고
홍시용감 (등시)		- 무농약재배 이상(마을에서 수집하나 봄부터 미리 특별 관리함) - 개당 150g이상(그 이하는 별도처리) - 홍시가 가능한 적정 속도 시 출하, 푸른 미숙과는 제외	
홍시용감 (대봉)		- 자주인증 저농약재배 이상, 농약방제는 5회 이하, 단 살충제/살균제 분리사용 시 7회까지 방제 가능함. - 개당 200g이상 - 홍시가 가능한 적정 속도 시 출하, 푸른 미숙과는 제외	
단감		- 자주인증 저농약재배 이상, 농약방제는 5회 이하, 단 살충제/살균제 분리사용 시 7회까지 방제 가능함. - 서촌조생: 110g이상 - 차량 부유 외: 특대(230g 이상), 대(200g 이상), 중(176g 이상), 소(125g 이상)	2018년 변경
참다래		- 무농약재배 이상 / 개당 70g 이상 - 인위적인 후숙처리 금지 - 수확시 당도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참다래/그린: 7°Bx 이상 · 참다래/골드: 8°Bx 이상 - 바람이 들어 육질에 동공이 생긴 것 제외	2018년 변경 2018년 신설

구분	내용	비고
밤	- 무농약재배 이상 / 직경 3.3cm 이상 / 발아과 제외	
매실	- 유기재배기준 적용 - 청매실 · 장아찌용 : 34mm 이상 · 호소용 : 28~34mm 미만 - 황매실(남고) : 30mm 이상	2018년 신설
호두	- 충실도 40% 이하, 쪽정이고, 파쇄과(부서진 것)제외	
은행	- 파쇄과, 발아과 제외	
유자	- 무농약재배 이상 / 완숙과, 지름 5cm 이상 - 과피·과육이 무르거나 변질된 것, 심한 병충해과 제외	
자두	- 자주인증 저농약재배 이상, 농약방제는 3~6회로 함 · 대석 외(대석, 홍로센, 정상 등): 3회 이하 · 후무사 외(후무사, 귀양, 태양, 왕자두 등): 4회 이하 · 추희: 6회 이하 - 당도 9° Bx 이상 정상출하 - 대석 외: 60g 이상, 후무사 외: 80g 이상, 추희: 100g 이상 / 그 이하의 것은 별도 처리 - 품종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함	
대추	- 자주인증 저농약재배 이상, 농약방제는 3회 이하 - 열과(손상과) 제외 / 생대추는 선택이 양호해야 함	
블루베리	- 유기재배 기준 / 지름 12mm 이상	

4 서류

4-0. 서류공통

- 무농약재배 이상.
- 육묘용 상토는 가급적 자가 제조를 권장하고, 인증 기준에 맞는 상토를 사용해야 함.
- 출하금지 : 부패변질구, 심한 상해구, 병해구/충해구(피해가 육질까지 미친 것), 발아된 것, 녹변된 것, 잘려진 것, 이물이 묻어 있는 것 제외.

4-1. 감자

구분	내용	비고
재배기준	- 겨울감자, 봄감자 : 무농약재배 이상 - 하지, 고랭지감자 : 유기재배 기준적용	
무게/크기	- 정상출하 : 90g 이상(단, 겨울 · 봄감자는 70g 이상) - 감자(소) : 50~90g 미만(단, 겨울 · 봄감자는 40~70g) - 감자(조림용) : 30g 이하	
포장방법	20kg 단위 박스 포장 입고	

4-2. 고구마

구분	내용	비고
재배기준	무농약재배 이상	
무게/크기	- 정상출하 : 80~350g미만 - 한입고구마 : 40~80g미만 - 큰고구마 : 350g이상	2018년 크기 변경
포장방법	20kg 단위 박스 포장 입고	

5 양념채소

5-1. 건고추

구분	내용	비고
재배기준	무농약재배 이상	
수분율	10%이상~18% 이하	
신선도	완숙과 수확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선홍색 또는 진홍색으로서 광택이 양호한 것.	
가격구분	생산과정에 따른 가격차별화(유기재배 기준으로 무농약은 약 20% 차등적용)	
기타	세척 후 건조, 미세척 시 수매불가 - 수매용기는 20kg 공용포대 사용(300g이상 증량하여 포장) - 화건 시 55℃ 이하에서 서서히 건조	

5-2. 마늘

구분	내용	비고
재배기준	무농약재배 이상 - 난지형마늘(장아찌용 포함)의 경우 유기재배기준 적용	표현 변경
무게/크기	- 한지형마늘(대 3kg) : 120개 미만(지름3cm이상) - 한지형마늘(소 2kg) : 160개 미만(지름1.5~3cm) - 종량 감모를 고려하여 포장작업 시 대와 소 각각 50g, 30g씩 증량하여 포장. - 난지형마늘 : 지름 3cm 이상	
포장방법	- 뿌리와 줄기는 잘라서 포장(줄기는 2cm 내외로 자를 것)	
신선도	병충해의 증상이 뚜렷하거나 진행성인 것 제외 육질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제외 기형 및 싹이 난 것, 뿌리가 난 것 제외 기계적 손상이 마늘쪽의 육질에 미친 것 제외 별마늘의 경우 별도 취급기준 적용	
기타	수확 후 건조 관리 철저	

5-3. 양파

구분	내용	비고
재배기준	무농약재배 이상 조·중생종 양파의 경우 유기재배기준 적용	표현 변경
무게/크기	구당 80g(지름 6cm이상) ~ 400g 이하 * 나머지는 등외품으로 별도 처리	
신선도	건조상태 양호할 것 쌍구, 열구, 이형구, 미숙구, 추대 생긴 것 제외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상처가 생긴 것 제외 선명한 선택으로 윤기가 양호한 것	표현 변경

5-4. 생강

구분	내용	비고
크기	구당 무게 50g 이상	
신선도	육질이 부패 또는 무른 것 제외	
기타	심 없는 것 / 흙 제거 필수 수확 후 최소 3일 건조 (1일 수확, 2일 선별 후 건조) 11월 출하시 상온보관. 출하 전 포장(벌크포함)	

6 근채류

6-0. 근채류 공통

- 유기재배 기준
- 꽃이 피거나 추대가 생긴 것, 역센 것은 제외
- 육묘용 상토는 가급적 자가 제조를 권장하고, 인증 기준에 맞는 상토를 사용해야 함
- 출하금지 : 부패변질구, 심한 상해과, 병충해과(피해가 육질까지 미친 것), 이물이 묻어 있는 것 제외

6-1. 무

구분	내용	비고
무게/크기	- 개당 1kg 이상(무청 제외 무게) - 8~9월은 개당 800g 이상	
기타	원뿌리 2개 이상인 것, 부러진 것, 뿌리가 3cm 이상 갈라진 것 제외(앞절단 3cm 이내) 열구, 바람들이 및 심이 없는 것. 가을무와 월동무는 무청 포함 공급(저장무 제외) 겉질이 매끄러우며 잔뿌리가 적은 것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6-2. 당근

구분	내용	비고
무게/크기	개당 90~350g 정상출하(제주산은 100~450g 정상 출하), 나머지는 별도 처리	
기타	앞 제거 시 구 절단 금지(1cm 이내로 절단) 결뿌리가 많은 것, 갈라진 것, 두 갈래근, 심 생긴 것 출하금지	

6-3. 도라지

구분	내용	비고
크기	- 단면 지름 1.5cm 이상 - 길이 15cm 이상	
신선도	육질이 부패 또는 무른 것 제외	
기타	두 갈래근 이하	

6-4. 더덕

구분	내용	비고
크기	단면 지름 1.5cm 이상 / 길이 10cm 이상	
신선도	육질이 부패 또는 무른 것 제외	
기타	두 갈래근 이하.	

6-5. 기타 근채류

구분	내용	비고
알비트	개당 150g이상	
콜라비	1kg 이상(2개 이상)	
마/큰등근마	개당 무게 150g 이상	2018

7 과채류

7-0. 과채류 공통

- 유기재배(별도로 재배방식이 지정된 품목은 제외함)
- 성장조절제 사용금지
- 육묘용 상토는 가급적 자가 제조를 권장하고, 인증(유기)기준에 맞는 상토를 사용해야 함
- 출하금지 : 부패변질구, 심한 상해구, 병충해구(피해가 육질까지 미친 것), 이물이 묻어 있는 것 제외

7-1. 수박

구분	내용	비고
품종	타원형 계통	
무게/크기	일반수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 : 8kg이상 - 대 : 7kg 이상~8kg 미만 - 중 : 6kg 이상~7kg 미만 - 소 : 5kg 이상~6kg 미만, - 극소 : 4kg 이상~5kg 미만 애플수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 1.2kg이상 - 중 : 0.9kg 이상~1.2kg 미만 - 소 : 0.6kg 이상~0.9kg 미만 토종흑수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kg이상 - 7kg 이상~8kg 미만 - 6kg 이상~7kg 미만 	애플수박, 토종흑수박 무게 기준 신설

구분	내용	비고
무게/크기	- 5kg 이상~6kg 미만 - 4kg 이상~5kg 미만 - 3kg 이상~4kg 미만 - 2kg 이상~3kg 미만	
신선도	꼭지 마른 것, 공동구(속이 빈 것 : 박수박) 출하금지	
당도	10°Bx 이상 정상출하(일반수박, 애플수박) 단, 장마기는 기후에 따라 9°Bx까지 정상 출하 9°Bx 이상 정상출하(토종흑수박)	당도기준 변경
기타	입고 시 1통씩 검수 생산과정에서 과 돌려주기	

7-2. 참외

구분	내용	비고
품종	부자골, 스마트골, 참미소	
무게/갯수	- 4kg : 160~670g, 10~20개 - 2kg : 160~670g, 5~10개 - 1kg : 160~670g, 3~5개 - 1.2kg(소과) : 110~160g, 6~11개	
신선도	물찬 과, 무른 과 제외. / 꼭지상태 신선도 유지.	
당도기준	11°Bx 이상 정상출하 *단, 장마기 10°Bx 정상출하	
기타	4월 입고시 물찬과 검수	

7-3. 딸기

구분	내용	비고
재배기준	무농약재배 이상	
품종	설향(논산3호), 육보, 행향, 산타	2017년 품종변경
무게/크기	개당 12g 이상 - 1kg 포장 시 1,050g 이상(상자무게 제외)	무게기준 변경
신선도	수확 후 포장까지 선도유지 3월~4월은 예냉(3시간) 후 입고	예냉 추가

구분	내용	비고
기타	<p>출하당도 9brix 이상</p> <p>냉해/동해방지 및 잿빛곰팡이 억제에 위한 보온기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온도가 -1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한해 냉해/동해 방지를 위한 보온조치 허용 - 외부온도: 기상청 예보 해당지역 기온을 기준으로 함. - 생육촉진을 위한 목적이 아닌 과실의 냉해/동해 방지, 잿빛곰팡이 억제에 위함. - 생산능가는 사용일, 사용시간, 유류(등유) 사용량 등을 기록하여 보고서를 제출 - 조치방법: 알코올, 촛불, 동력팬, 열풍기 등 시설에 따라 조치 	당도기준 신설, 보온기준 변경

7-4. 토마토

구분	내용	비고
품종	완숙토마토, 푸른토마토, 방울토마토, 흑토마토	품종 추가
무게/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숙토마토, 푸른토마토 : 개당 100g 이상 정상출하, 이하는 별도 처리 - 흑토마토 : 개당 70g 이상 - 방울토마토 : 개당 10~30g - 송이방울토마토 : 40~90g - 그 외 별도처리 	무게 기준 변경
신선도	<p>열과, 속이 빈 것 제외</p> <p>- 착색률 : 고온기(6월~8월) 70% / 그 외 80%</p>	2017년 수정

7-5. 칼라방울토마토<신설>

구분	내용	비고
품종	5가지 색상 기준(빨강, 노랑, 녹색, 오렌지, 얼룩) (품종별 15% 이상 혼입)	
신선도	<p>열과, 속이 빈 것 제외</p> <p>- 착색률 : 80%이상</p>	

7-6. 오이

구분	내용	비고
품종	백다다기, 조선오이, 피클용오이, 노각오이	
무게/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오이 : 전체 길이 19cm 이상(구부러진 정도가 4cm 이상인 것 제외) - 조선오이 : 전체 길이 15cm 이상일 것 - 피클용오이 : 전체 길이 12cm 이하, 직경 3.5cm 이하 - 노각오이 : 700g 이상/개 	
신선도	끝이 무른 것, 과숙과 출하금지	

7-7. 기타 과채류

구분	내용	비고
메론	머스크, 블랙다이아, 하니원, 백자 - 백자메론 개당 600g 이상, 하니원메론 개당 800g 이상, 그 외 1kg 이상 - 당도 11°Bx 이상	무게 기준 변경
단호박	특대 : 9kg 이상, 대 : 7~9kg, 중 : 5~7kg, 소 : 3~5kg	
늙은호박	1.5kg 이상 *1~1.5kg, 1kg 이하는 별도처리	
애호박	쭈키니 20cm 이상, 애호박 16cm 이상 개당 280g 이상(가을재배 250g 이상) 풋호박(늙은호박 품종) 300g 이상	
가지	장과형 : 20cm 이상 / 단과형 : 15cm 이상 심하게 휘어진 것 제외	
피망	개당 70g 이상	
찰옥수수	개당 200g 이상(찰옥1, 2호와 9~10월 옥수수는 180g 이상 - 불임률 20% 미만, 과숙과 절대 출하 금지 - 얼룩찰옥수수 : 개당 무게 100g 이상 - 흑찰옥수수 : 개당 무게 70g 이상	2018년

8 업채류

8-0. 업채류 공통

- 유기재배 기준
- 꽃이 피거나 추대가 생긴 것, 억센 것은 제외
- 육묘용 상토는 가급적 자가 제조를 권장하고, 인증(유기)기준에 맞는 상토를 사용해야 함

8-1. 품목별

구분	내용	비고
고구마순·부추	20~40cm	
깻잎순	깻잎 세로길이 10cm 이하 줄기 등이 경화된 것 제외	
대파	연백부 15cm 이상(조선대파는 별도 기준 적용) 마른잎 제거	
땅두릅	길이 : 13cm~25cm 연백부는 전체 길이의 (30%~50%) 미숙, 세어버린 잎 출하 금지	2018년 신설
배추	포기당 2kg 이상, 겉잎과 오염된 잎 제거 8~9월은 포기당 1.5kg이상 양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양호한 것	
피망	15cm 이상	
브로콜리	원순 꽃지름이 10cm 이상 - 무게 250g 이상(제주산 350g 이상) - 줄기 7cm 이하로 깨끗하게 다듬은 것 - 중량 : 제주산 350g 이상 / 제주산 외 : 250g 이상 원순 2덩어리까지 포장(결순 혼입 금지) 단, 고온기(7~9월)생산되는 브로콜리는 원순 3덩이 까지 포장 가능-개화로 인한 황화현상 없는 것	
시금치	25cm 이하 / 뿌리는 0.5cm로 잘라서 포장 상해, 시든잎, 마른잎, 변색된 잎이 없는 것	
쌈배추	2포기 800g 이상 / 겉잎과 오염된 잎 제거	
숙갓	20~25cm	
아욱·근대	20~30cm / 경화된 것 제외	
알배기배추	포기당 1kg 이상 / 겉잎과 오염된 잎 제거	

구분	내용	비고
양배추	1kg 이상 정상출하, 700~1kg 별도 공급 - 적양배추 : 600g이상 정상출하, 400~600g 별도 공급 양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양호한 것 겉잎과 오염된 잎을 제거하고 뿌리를 깨끗하게 자른 것	2017년
양상추	300g 이상	
얼갈이	20~30cm 정상출하	
열무	25~40cm / 변색 및 경화된 것 제외	
중파	40~60cm	
쪽파·실파	20~35cm	
채심	꽃이 핀 것 정상 공급.(신설)	
청경채	15cm 이상	
치커리	15~25cm	
케일	녹즙용:30cm 이상 / 쌈용:10~20cm	2018년 길이변경
콜리플라워	300g 이상	
호박잎	너비 24cm 이하 잎이 누렇게 되거나 역세진 것(기준 외의 잎이 20% 이상일시 입고금지)	

8-2. 깻잎

구분	내용	비고
재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조 허용(동절기 최대 4시간이내 허용) - 겨울출하 깻잎 냉해/동해방지를 위한 보온기준 적용 · 외부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경우에 한 해 냉해/동해방지를 위한 보온조치 허용 · 외부온도: 기상청 예보 해당 지역 기온을 기준으로 함. · 생육촉진을 위한 목적이 아닌 냉해/동해로 인한 동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 생산농가는 사용일, 사용시간, 유류(등유) 사용량 등을 기록하여 보고서를 제출 · 조치방법: 알코올, 촛불, 동력팬, 열풍기 등 시설에 따라 조치(신설) 	2018년 문구 수정
무게/크기	길이 10~15cm	

9 김장채소

구분	내용	비고
공통기준	<p>유기재배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묘용 상토는 가급적 자가 제조를 권장하고, 인증 기준에 맞는 상토를 사용해야 함 - 꽃이 피거나 추대가 생긴 것 	
포장배추	<p>포기당 2kg 이상 전체무게(3포기기준) 7kg 이상 노지재배 출하 전 15일 간 관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기당 2kg 이상 (단, 산지 작황 등의 문제로 1포기 중량이 2kg이하일 경우, 사전 공지 이후 4포기까지 포장하여 총 중량 7kg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음. 결구는 반드시 80%이상이어야 함) 출하 금지: 결구되지 못한 것(80%이하), 중량 미달, 속이 부패되거나 썩은 것, 병충해가 심한 것. 	2017년 신설
절임배추	<p>규격 : 10kg박스. 5~7포기(생산계획은 6.5포기/상자) 절임쪽수 : 9~13쪽 원물 포기당 2~4kg 절임용 소금: 한살림생산지 천일염 사용 절임염수: 거름망을 통과시켜 이물질 제거 후 한번 더 사용 가능(총2회) 세척방법: 정수(淨水)에서 3회 이상 완전세척(공급 후 별도의 세척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 포장: 비닐포장시 공기 배출 후 결속, 포장상자는 한살림 공용 상자 사용</p>	2017년 신설
포장무	<p>개당 1kg 이상, 최대 6개 이내 규격화 : 1망(5개) 출하기준 : 날개중량 - 포장무 1kg 이상 ※무청을 함께 공급함. 단, 폭설 등에 의해 무청의 손상이 있을 경우 제거 후 공급 출하 금지 : 바람들이, 동해 입은 것(경미한 것 제외), 두갈래 구(기형) 포장방식 : 포장무-녹색 망, 동치미무-붉은색 망(비닐 포장 사용 금지)</p>	2017년 신설
동치미무	<p>개당 500g~900g, 최대 7개 이내 동치미무 전용품종 사용 규격화 : 1망(5개) 출하기준 : 날개중량 - 동치미무 0.6~1kg * 무청을 함께 공급함. 단, 폭설 등에 의해 무청의 손상이 있을 경우 제거 후 공급 출하 금지 : 바람들이, 동해 입은 것(경미한 것 제외), 두갈래 구(기형) 포장방식 : 포장무-녹색 망, 동치미무-붉은색 망(비닐 포장 사용 금지)</p>	2017년 신설
대파	<p>연백부 15cm 이상 마른잎 제거 경미한 병충해 흔적(반점) 및 상해 발생시 조직적 협의를 거쳐 출하여부 결정</p>	2017년 신설

구분	내용	비고
쪽파	20~35cm 경미한 병충해 흔적(반점) 및 상해 발생시 조직적 협의를 거쳐 출하여부 결정	2017년 신설
알타리무	뿌리 굵기 2~5cm 추대 및 바람이 들거나 심 박힌 것, 억센 것 제외	
갓	최대길이 4.5cm이하 억센 것 제외 경미한 병충해 흔적(반점) 및 상해 발생시 조직적 협의를 거쳐 출하여부 결정	2017년 신설

10 버섯

구분	내용	비고
생표고버섯	갓이 완전히 벌어지지 않고 약간 오므라든 것으로 그 정도가 균일한 것. 갓의 형상이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균일하며 크기가 균일한 것. 갓의 색깔이 품종 고유의 색택을 띠는 것 신선하고 탄력이 있으며, 흡습하지 아니한 것. 병충해나 이물질이 없는 것.	2017년 신설

11 유통란

구분	내용	비고
계사 조건	<p>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잘되고 온도, 습도 조절이 용이한 구조로써 먼지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를 낮출 수 있는 평사형 개방계사구조로 한다(야마기시형, 방목형 모두 포함). · 계사와 계사와의 거리는 4m 이상으로 한다. · 계사 바닥의 바닥재로는 왕겨, 톱밥, 짚, 마른계분 등을 사용하며, 입추시기에 10cm 내외로 충분히 깔아준다(청결, 계분건조). - 채광 및 온도관리가 용이하도록 지형에 맞게 계사방향을 정한다(남향 권장). - 암수비율(15:1) - 계분은 별도의 비가림 퇴비사를 설치하여 보관 및 사용한다. - 계사 주변 제초제 사용을 금지한다. - 계사는 순환 방식으로 충분한 휴면기를 둔다. - 닭에게 충분한 활동 및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닭의 행동적 욕구를 고려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 · 계사 칸당 면적은 8~20평 이내로 함. · 사육 마리 수는 암수 포함해서 평당 16수 이내로 한다(120일령 기준). · 산란상자 설치: 빛이 새지 않고 닭들이 출입이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며, 산란에 불편함이 없는 면적을 확보한다. · 햇대 설치: 칸의 모든 닭들이 올라가서 잘 수 있는 공간 확보한다(길이: 마리당 15cm 이상 확보, 높이: 바닥으로부터 40cm 이상~100cm 이하) · 사료통: 일령별 모이통의 개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모든 닭들이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충분한 섭취공간 확보: 선형급이기 10cm/수, 원형급이기 4cm/수 이상). · 급수기: 모든 닭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운영한다(중형 급수기 1개 이상/100수, 니플/컵형 1개 이상/10수) 겨울철 급수기는 얼지 않게 관리하여 항상 신선한 물을 제공한다. 	
	<p>반품 조치 기준</p> <p>100판당 5판 검수하여 7%(10알) 이상 기준 외 알 발생 100판당 1판 검수시 20%(6알) 이상이 난황과 난백이 심하게 풀어지는 알 전체적으로 난각에 이물이 심하게 묻은 경우</p>	
권장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사 안팎의 환경·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질병 감염과 질병 감염체의 증식을 예방한다. - 폭염에 대비하여 안개분무기, 선풍기 등을 설치하거나 내열이 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 겨울철 급수기는 얼지 않게 관리하여 물을 먹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 감염을 예방하고 닭이 안정을 취하도록 계사입지는 가능한 도로와 떨어진 독립입지로 하고, 음악 등의 소음은 피한다. - 산란상자 안의 왕겨는 충분히 깔아주고 자주 교체하여 산란에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구분	내용	비고
사료	<p>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생제, 성장촉진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 동물용 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은 구입 배합사료 및 자가 제조 사료를 사용한다. - 항생제, 성장 촉진제 혼합금지 -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된 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 사료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합사료와 조사료의 급여량은 닭의 활동과 계란의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비율로 설정한다.(산란기에는 청초 및 풀김치를 마리당 15g 이상 급여하며, 육성기에는 닭의 상태나 기호에 따라 양을 조절하며 지속적으로 급여한다) -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분이 풍부하게 포함된 청초와 풀김치(엔실리지)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사육수수에 맞는 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포를 확보한다. · 1,000수당 500평 이상, 겨울철 풀김치 1,000수당 2ton 이상 확보해야 한다. · 풀김치는 청초로 대체 가능하고 자체생산 및 국내산 조사료를 구입해서 사용 가능하다. - 음수는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제공한다(연 1회 이상 정기검사). · BM수 등 정부 허가 하에 유통되는 바이오 음수도 가능하다. - 자가 사료로는 곡류의 부산물이나 생균제, 황토, 숯, 부엽토 및 채소류의 부산물 사용 가능하다(부추나 파 종류의 품종들은 피한다). 단, 난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패각, 패분 등 사용 시 안전성이 검증된 원료를 사용한다. - 사료 재배지, 해당 작기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료	<p>권장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는 소화흡수력을 높이고 위장의 휴식을 주기 위하여 1일 1회 급여하며 2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을 둔다. 잠들기 전 충분한 사료의 섭취를 위하여 해지기 2시간 전까지는 사료를 급여한다. - 자동급여 라인을 설치했을 경우 별도의 보조 모이통을 두어 사료량의 편차를 조절한다. - 어린 병아리 시기에는 무제한 급여를 하며, 그 후 점차 공복 시간을 늘려간다(무제한 급여를 하는 시기에는 신선한 사료의 관리가 중요). - 육성기에는 입추해서 3주 정도까지 현미나 청치를 충분히 급여하고 발생 3일째부터 어린병아리사료와 삶은 계란과 풀을 주기 시작한다. 삶은 계란은 14일령 정도까지 1마리당 60g 1개 정도의 계란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며, 풀은 섬유질이 풍부한 화분과 작물을 급여한다. 초기에는 빨리 잘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적은 양부터 시작하여 점차 양을 늘려 충분히 급여한다. 청초나 부식토 등 조사료를 급여하여 위장의 소화 흡수기능을 높이며, 모이통과 물통의 거리를 멀리 두어 운동성을 높인다. - 청초나 풀김치는 이탈리아나라이그라스, 연맥, 호밀 등 섬유질과 비타민C 등의 영양이 풍부한 작물로 한다. - 사료 재배지에는 가능한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 3~40일령 어린병아리사료, 41~105일령 중병아리사료, 105~119일령 산란예비사료, 120일령~ 산란사료 	

12 한우

구분		내용	비고
축사		개방우사(계류금지)	
면적		두당 2.5평	
기간		생후 20~24개월(비거세 기준)	
환기/생난방		필요시 선풍기, 지붕 위 물뿌림, 윈치커튼 조정, 에어쿨, 개폐식 천창이용	
사료	기준	· 항생제 · 성장촉진제 혼합금지 · 육성기 이후 GMO 사료 배제	
환경	분뇨	처리장 의무화	
	축사청소	바닥이 질지 않게 할 것	
	냄새제거	생균제, 미생물제제 사용	
	축사주변	제초제 사용금지	
구입		자가 생산권장, 부족 시 구입	
출하기준		생체 600kg 이상	
질병	예방	백신예방 허용	
	소독	필요시(약제 선별사용)	
	구충	봄 · 가을 2회	
	치료	협의, 치료일지 작성 · 비치	
기타		뿔 자르기 금지	

13 국산사료 한우

구분	내 용	비 고	
사육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는 소규모 가족복합농 형태의 축산(1~5마리)을 지향 - 공동체별 유기순환구조가 실현되는 일정 규모의 축산(1~10마리)도 허용 		
농가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종과 축산이 결합된 가족농 형태의 소농가 - 무항생제(non-gmo)한우와 유기 한우, 지역자급형 한우(국산사료 한우)는 구분하여 사육하여야 함(한 농가에서 한 유형만 사육가능) 		
사료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생제 · 성장촉진제 혼합금지 - 자급축산(국내산 부산물 100%)이상. 수입산 원료와 구입 배합사료 사용금지 - 소규모 경종복합농의 자가 농사부산물과 사료작물 활용(한살림농사의 부산물(벼짚, 쌀겨, 콩각지 등)과 사료용 보리, 쌀 등) - 국내산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에서 일정 범위의 지역자급이 실현되기까지 국내산 부산물 및 사료작물도 허용 - 사료포의 운영은 농가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도록 하나, 사육농가는 한살림 농사를 짓고 있어(1차 농산물의 약정 출하) 부산물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함 		
사양 관리	입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아지는 농가에서 직접 출산을 목표로 하고, 외부에서 구입도 허용 	
	축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류식 사육은 금지하고 개방우사 원칙 - 두당 2.5평 이상의 축사 면적 확보. 단, 12개월령 이상부터 기준 면적 적용 - 축사 내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바닥이 질지 않게 벼짚, 왕겨 등을 충분히 깔아주며, 통풍과 채광이 용이한 환경을 준비하고 유지 - 축사 내 냄새제거를 목적으로 미생물제제 또는 생균제 사용 가능 - 기존에 관행 한우를 사육해 오던 농가가 한살림의 국산사료 한우로 전환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병행사육도 선별적으로 허용. 단, 관행 한우와 국산사료 한우는 구분 사육되어야 함 	
	질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발생 전 사전 예방 조치(쾌적한 환경 조성 및 농기구 등의 위생관리)를 장려하며, 법정 전염병 등의 발생 시 한살림과 협의 치료 - 체계적인 백신 투약을 통한 예방 조치를 허용 - 구충은 봄·가을 2회 진행하나 기본적인 질병예방 계획은 지역 수의사 등의 협의나 농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뿔자르기 금지(수소) 	

구분	내용	비고
기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일지 작성 - 사료의 생산과 구입 내역을 기록 관리(사육일지 작성 및 운영 권장) · 농가 외 국내산 부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나, 구입한 부산물에 대한 시기·구입처·물량·국산인지 증명방법(원산지증명서, 친환경인증서, 생산자 확인서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 · 자가생산한 사료의 경우 부산물이나 사료작물명·재배면적·공급량·재배방식(인증여부)을 기록하고 보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지하며, 경종에 사용될 퇴비를 만들 수 있는 퇴비장을 준비(권장) - 축사 주변의 제초제 사용을 금지하며, 주변 소독은 허용약제를 사용 	
출하관리	출하 사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산 이상의 번식우는 출하하지 않고 3산 이하에서 출하. 소의 상태나 수급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출하 시기는 농가와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 - 번식우(암소)의 경우 젖을 떼 후 6개월 이상 비육 후 출하 - 출하체중은 470kg 이상 	
	전환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료로 키우고 있는 번식우(암소)를 한살림이 추진하고 있는 국산사료 한우로 전환할 경우, 1산까지는 인정하되 최소한 12개월 이상 국산사료를 먹어야 함 	

14 돼지

구분		내용	비고
축사		개방돈사	
면적		평당 2.5두 이하	
기간		생후 180~200일	
환기/생난방		필요시 선풍기, 지붕 위 물뿌림, 윈치커튼 조정, 에어쿨, 환기구 이용	
사료	기준	항생제·성장촉진제 혼합금지	
환경	분뇨	처리장 의무화	
	축사청소	바닥이 질지 않게 할 것	
	냄새제거	생균제, 매생물제제, 숯가루 등 사용	
	축사주변	제초제 사용금지	
구입		자가 생산 단, 자돈 외부구입 시 이유직후 입식	
출하기준		생체 110kg	
질병	예방	백신예방 허용	
	소독	매일(약제 선별사용)	
	구충	봄·가을 2회	
	치료	협의, 치료일지 작성비치	
기타		사용자재 협의 꼬리·이빨자름 허용	

15 육계

구분		내용	비고
구입		국내산 병아리. 부화장 구입	
계사 및 사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항생제 인증. - 방목장 사육(평사선택, 케이지 계사 제외). 평당 50수 이내로 닭에게 충분한 활동 및 휴식의 공간을 제공(유기인증 전환 시 평당 33수 이내) - 채광, 온도, 습도, 통풍이 용이한 쾌적한 계사구조를 형성·관리 · 유창계사 · 계사 바닥에 깔짚이나 왕겨 충분히 유지 · 필요시 선풍기, 에어컨, 지붕 위 물뿌림, 윈치커튼 조정, 개폐식 천창이용하여 폭염 등에 대응한 시설 마련. - 연 1회 수질 검사를 통과한 식수로 이용 가능한 물로 급수 - 질병관리를 위한 계사 간 휴기 운영 - 동일 건물 내 다른 사육방식(무항생제와 일반사육, 유기와 무항생제 사육)을 병행 금지. 	
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가 첨가되지 않은 구입 배합사료 및 자가 제조사료(발효사료, TMR 등) -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사료 금지. 농가 및 국산 부산물을 활용한 조사료의 급여를 권장. 	
질병 관리	초기	- 예방주사 가능 / 사료첨가 투약, 주사, 구충제, 소독, 영양제 가능	
	전후기	- 평소 투약 금지 질병시만 주사, 투약(한살림 협의 치료) 투약 후 약품별 충분한 휴약기간을 준수(법정기간 2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계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지하며, 경중에 사용될 퇴비를 만들 수 있는 퇴비장을 준비(권장) - 축사 주변의 제초제 사용을 금지하며, 주변 소독은 허용약제를 사용 	
출하관리		- 생후 27일 전후(삼계), 30~32일(육계) 협의출하	
기록관리		- 질병 및 이에 대응한 치료일지 작성하고 이를 보관. 입추 및 출하 기록	

16 오리

구분		내용	비고
구입		국내산을 자체 생산하거나 부화장에서 구입	
계사 및 사육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항생제 인증. - 평당 사육두수 : 10~12수 - 바닥관리 : 왕겨를 수시로 보충하여 청결히 관리. - 축사환경 : 채광, 온도, 습도, 통풍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축사는 적절한 단열, 환기시설이 갖추어져야 함. - 연1회 수질검사를 통과한 식수로 이용 가능한 물로 급수 	
사료기준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등 동물용 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은 구입 무항생제 사료 및 자가 제조 사료(미생물 발효 조사료 급여).	
질병 관리	초기	예방주사, 예방약의 음수, 사료첨가 투약, 주사, 구충제, 소독, 영양제 가능	
	전후기	평소 투약 금지 질병시만 주사, 투약(한살림 협의 치료)후 약품별 충분한 휴약 기간을 준수(법정기간 2배)	
환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계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지하며, 경중에 사용될 퇴비를 만들 수 있는 퇴비장을 준비 - 축사 주변의 제초제 사용을 금지하며, 주변 소독은 허용약제를 사용 - 축사 화학적 소독 금지 	
출하관리		<p>평균생체중량 : 3.2kg 출하.</p> <p>사육기간 : 43~45일</p> <p>도입 및 가공 시설은 HACCP인증을 받은 시설을 이용.</p> <p>출하 전 일반세균, 대장균군, 살모넬라 검사서 제출.</p>	
기록관리		사료 생산 및 구입과 급여내용, 입추 및 출하 기록, 질병 및 이에 대응한 치료일지 작성보관.	

17 꿀

구분		내용	비고
생산 및 사육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밀 방법은 계상채밀을 원칙으로 한다. - 수분을 19~20%로 채밀을 하여야 하며 저온 장마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인위적 농축을 하지 않는다. - 저온, 장마 등 이상기후에 의해 수분이 기준보다 많이 함유한 벌꿀은 한살림연합과 벌꿀생산자 공동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채밀기에는 당액(설탕)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 첫 채밀은 봄에 먹이로 사양한 잔존 설탕의 제거를 위하여 2번의 정리채밀을 해야 한다. - 로얄젤리 생산을 위해 부득이 급여 하는 당액의 양은 최소로 하여야 한다. - 월동 중 동사나 아사에 의하여 봄에 증봉을 구입 할 경우에는 기존 양봉농가의 항생제, 농약 등의 잔류를 제거시키기 위해 2월 말일 이전에 구입을 완료 해야 함. 	
질병 관리	약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과 면역력을 위하여 목초액, 프로폴리스, 홍삼, 등 한약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진드기에는 잔류가 없는 개미산, 옥살산 비넨볼, 등 친환경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정부에서 그해에 공급하는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 항생제 사용금지. 	
	처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공급 하는 약제는 봄 벌 사육에서 아카시아채밀이 끝날 때까지 사용 금지. - 친환경재라도 채밀 5월1일 기준하여 45일 이전에 끝내야 하며, 채밀 후 7월1일 이후에 한다.(단. 잡화꿀을 따지 않을 경우에는 아카시아 채밀 후 바로 약제 처리를 할 수 있다.) - 정부의 공급약제는 년2회 할 수 있다.(1회 처리라 함은 1주일을 주기로 3회 처리 하는 것을 1회라 한다.) 	
환경기준		<p>채밀시기에 벌꿀의 행동반경 2km내에 항생제, 농약의 잔류가 될 수 있는 과수원 축사는 가급적 피하여 이동을 한다.</p>	
출하관리		<p>생산된 벌꿀은 시료를 채취해 항생제, 식품공전벌꿀규격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탄소동위기준은 -23.5~-27(per mil) 이하의 순수한 자연 벌꿀만을 공급 한다.</p>	
기록관리		<p>영농일지, 치료일지 작성 의무화함.</p>	

18 로얄제리, 화분

구분	내용	비고
일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물 생산과 관련된 벌 사육은 꿀 생산출하기준을 준용한다. - 봉산물로써 축산물로 분류한다. 	
로얄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화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로열젤리의 생산을 중단한다. - 로열젤리를 다량 생산하는 중국산 개량 꿀벌 종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여름 로얄젤리는 7월15일 자연산 꽃가루가 반입될 때까지만 생산한다. - 7월15일 이후라도 봄에 자가 생산한 꽃가루를 급여 하여 생산 할 수 있다. 	
화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에 수집한 화분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 이물질을 선별이후 바로 냉동실에 보관 공급한다. - 보관에 해충방제를 위한 약제사용을 금지한다. 	

[별첨자료 1] 2017년산 제현울별 벼 수매가격표

메 벼

구분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원/1kg)	(원/40kg)	(원/1kg)	(원/40kg)
82%이상	2,060	82,400	1,818	72,700
81~81.9%	2,040	81,600	1,800	72,000
80~80.9%	2,020	80,800	1,783	71,300
79~79.9%	2,000	80,000	1,765	70,600
78~78.9%	2,000	80,000	1,765	70,600
77~77.9%	1,980	79,200	1,748	69,900
76~76.9%	1,960	78,400	1,730	69,200
75~75.9%	1,940	77,600	1,713	68,500
75% 미만	1,740	69,600	1,538	61,500

찰 벼

구분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원/1kg)	(원/40kg)	(원/1kg)	(원/40kg)
82%이상	2,220	88,800	1,898	75,900
81~81.9%	2,200	88,000	1,880	75,200
80~80.9%	2,180	87,200	1,863	74,500
79~79.9%	2,160	86,400	1,845	73,800
78~78.9%	2,160	86,400	1,845	73,800
77~77.9%	2,140	85,600	1,828	73,100
76~76.9%	2,120	84,800	1,810	72,400
75~75.9%	2,100	84,000	1,793	71,700
75% 미만	1,900	76,000	1,618	64,700

[별첨자료 2] 생산·출하·운송단계 하절기 품온관리 매뉴얼

엽채류 생산·출하·운송단계 품온관리 준칙

- ① 노지재배는 우천 시 수확작업을 하지 않는다.
- ② 시설재배 수확 시 차광막 등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 ③ 수확시간은 하루 중 시원할 때 실시하며, 하절기에는 새벽부터 이른 아침에 수확한다.
- ④ 재배포장에서 수확작업과 동시에 소포장하지 않는다.
- ⑤ 수확 후 즉시 냉기순환이 가능한 용기에 담아 벌크 상태로 예냉 및 물기를 충분히 건조한 후 소포장한다.
- ⑥ 포장지 표기사항과 생산출하기준을 확인한 후 포장한다.
- ⑦ 포장실 온도를 15℃ 내외로 관리해야 한다.
- ⑧ 포장 전후에 실온 노출을 최소화하고 즉시 저온저장고에 보관한다.
- ⑨ 품목별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 ⑩ 산지 물류거점(집하장)까지 이동 시 직사광선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품온을 유지해야 한다.
- ⑪ 산지 물류거점(집하장)에서 물류센터까지 이동까지는 반드시 냉장탑차를 이용해야 한다.
- ⑫ 배송차량은 15℃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자동온도기록장치(타코메타)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실내기 높이 이하로 적재하여 냉기 순환이 유지되도록 한다.
- ⑬ 과도한 적재를 삼가하고 수송 시 진동 및 유동으로 인한 물품 손상에 주의한다.
- ⑭ 하절기 포장상자는 반드시 냉기순환이 원활한 용기를 사용한다.

근채류 생산·출하·운송단계 품온관리 준칙

- ① 노지재배 우천 시 수확작업을 하지 않는다. 단, 건조(예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확할 수 있다.
- ②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낮 시간대는 수확작업을 하지 않는다.
- ③ 재배포장에서 수확작업과 동시에 소포장하지 않는다.
- ④ 수확 후 즉시 냉기순환이 가능한 벌크 상태로 예냉(예건) 처리 후 소포장한다.
- ⑤ 저장품은 선입선출을 위해 구분관리한다.
- ⑥ 수확 후 저장하는 품목은 연합(물류센터) 산지발주를 받은 후 소포장해야 한다(사전 소포장 금지).
- ⑦ 포장지 표기사항과 생산출하기준을 확인한 후 포장한다.
- ⑧ 포장장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은 곳으로 15℃ 내외로 관리해야 한다.
- ⑨ 포장 전후에 실온 노출을 최소화하고 즉시 저온저장고에 보관한다.
- ⑩ 품목별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품목별 저장온도 참고).
- ⑪ 산지 물류거점(집하장)까지 이동 시 직사광선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품온을 유지해야 한다.
- ⑫ 산지 물류거점(집하장)에서 물류센터 이동 시 외부기온이 15℃ 이상일 경우 반드시 냉장탑차를 이용해야 한다.
- ⑬ 배송차량은 15℃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자동온도기록장치(타코메타)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실내기 높이 이하로 적재하여 냉기 순환이 유지되도록 한다.
- ⑭ 과도한 적재를 삼가하고 수송 시 진동 및 유동으로 인한 물품손상에 주의한다.

과채류 생산·출하·운송단계 품온관리 준칙

- ① 노지재배의 경우 우천 시 수확작업을 하지 않는다. 단, 건조(예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확작업을 할 수 있다.

- ②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낮 시간대는 수확작업을 하지 않는다.
- ③ 수확 후 즉시 냉기순환이 가능한 벌크 상태로 예냉(예건) 처리 후 소포장한다.
- ④ 저장품은 선입선출을 위해 구분 관리한다.
- ⑤ 수확 후 저장하는 품목은 연합(물류센터) 산지발주를 받은 후 소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선 소포장 금지).
- ⑥ 포장지 표기사항과 생산출하기준을 확인한 후 포장한다.
- ⑦ 출하기준에 부합하는 선별작업을 진행한 후 소포장해야 한다.
- ⑧ 포장장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은 곳으로 15℃ 내외로 관리해야 한다.
- ⑨ 포장이 완료된 물품은 즉시 저온 저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 ⑩ 산지 물류거점(집하장)까지 이동 시 직사광선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품온을 유지해야 한다.
- ⑪ 산지 물류거점(집하장)에서 물류센터 이동까지는 반드시 냉장탑차를 이용해야 한다.
- ⑫ 배송차량은 15℃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자동온도기록장치(타코메타)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내기 높이 이하로 적재하여 냉기 순환이 유지되도록 한다.
- ⑬ 과도한 적재를 삼가하고 수송 시 진동 및 유동으로 인한 물품손상에 주의한다.

서류 생산·출하·운송단계 품온관리 준칙

- ① 노지재배의 경우 우천 시 수확작업을 하지 않는다. 단 건조(예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확작업을 할 수 있다.
- ②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충분히 건조 후 저장한다.
- ③ 저장 시 컨테이너 상자에 벌크 보관한다.
- ④ 상처난 물품과 정상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선별 후 저장한다.
- ⑤ 품목별 권장 저장고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품목별 저장온도 참조).
- ⑥ 포장지 표기사항과 생산출하기준을 확인한 후 포장한다.
- ⑦ 산지 물류거점(집하장)까지 이동 시 직사광선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품온을 유지해야 한다.
- ⑧ 벌크 입고시 급격한 온도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품온을 서서히 올려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⑨ 과도한 적재를 삼가하고 수송 시 진동 및 유동으로 인한 물품손상에 주의한다.

버섯류 생산·출하·운송단계 품온관리 준칙

- ① 갈변, 상처, 부러진 물품을 선별하여 수확한다.
- ② 수확 후 바로 예냉 처리한다.
- ③ 예냉실 내부온도가 빙점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④ 저장실 온도는 2~4℃ 유지하고, 중량감모 및 수분증발을 막기 위해 비닐로 덮어준다.
- ⑤ 포장실 온도를 10~15℃를 유지한다.
- ⑥ 포장지 표기사항, 출하기준을 확인하고 포장한다.
- ⑦ 산지 물류거점(집하장)으로 이동 시 냉장탑차를 이용한다.
- ⑧ 산지 물류거점(집하장)에서 물류센터 이동까지는 반드시 냉장탑차를 이용해야 한다.
- ⑨ 배송차량은 4~7℃를 유지해야 하며, 자동온도기록장치(타코메타)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실내기 높이 이하로 적재하여 냉기 순환이 유지되도록 한다.
- ⑩ 과도한 적재를 삼가하고 수송 시 진동 및 유동으로 인한 물품 손상에 주의한다.

[별첨자료 3] 한살림 자주기준(세부) : 저농약 과실류

한살림에서 정하는 저농약 과실(사과, 배, 복숭아, 감, 자두, 대추 등)은 생산계획신청부터 방제계획 확인, 현장점검, 서류제출 및 확인 등의 일련의 자주인증 절차를 거쳐서 자주관리점검위원회에서 승인됩니다.

구분	세 부 기 준
경영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살림 자주인증(저농약 과실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산자로 한다. 가. 한살림 생산자 회원으로서 자주인증(저농약 과실류) 재배기준으로 생산하고 약정한 자 나. 자주인증(저농약 과실류) 수급대상자 자주인증신청은 통상적으로 매년 연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농사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이 상세히 들어가 있어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년 3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주인증 생산자는 인증심사과정에서 생산과정을 확인 가능하도록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자주인증신청서, 영농일지, 수질검사서, 시비처방서, 자재구매내역서(농약 등), 출하기록 자료, 방제계획서 등 영농과 관련된 자료 위의 '3'의 자료는 한살림에서 요청할 경우 매년 한살림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생산자는 최소 2년 이상의 재배이력자료(영농일지 등)를 보관하고, 과거 생산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용수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작물 재배에 사용하는 용수는 농업 용수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원별 용수에 대한 최소 1회의 검사 기록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단 하천/호소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최근 1년 내 검사한 검사 결과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에서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한 등급 이상의 용수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적인 검사성적서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 인증심사 과정에서 용수와 관련한 주변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어 한살림에서 재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필지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지번호는 자주인증신청서에 신청한 필지와 동일해야 한다. 완충지 확보는 기본적으로 오염원으로부터 4m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차단막(높이 1m, 오염원이 과수인 경우 2m)이 설치되어 있다면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생산과정에서부터 수확, 저장, 출하시까지 혼입의 우려가 없도록 구분관리 되어야 한다.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고 구분관리를 하고자 하는 영역은 반드시 구분 표시가 있어야 한다. 농약의 비산 등으로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시 점검자는 잔류농약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생산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필지 안에 비허용물질들을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토양 관리 (화학비료, 퇴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는 필지 토양의 생물다양성, 순환성, 지속가능성 등 농업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 및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토양시비처방서는 각 필지별로 3년에 최소 1회 이상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단, 매년 영농일지 등에 토양의 상태, 자재투입 및 결과, 평가 등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화학비료는 재배포장별로 시비처방서 또는 제품에서 권장하는 성분량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세워 사용해야 한다.

구분	세 부 기 준
토양 관리 (화학비료, 퇴비)	<p>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도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5. 오염원(관행재배 포장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관개용수 유입이 없도록 독의 높이와 넓이, 배수로를 확보하여야 한다.</p> <p>6. 공장형 축분(공장에서 상품화하여 생산되는 퇴비)은 사용을 금지한다. 단 유기자재목록 등재된 퇴비는 사용가능하다.</p>
화학 합성 농약 사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사용할 화학합성농약에 대한 사용계획을 작기 전에 수립하여 한살림과 사전에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화학합성농약의 사용은 농약관리법, 농약안전사용기준, 한살림 생산출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상세기준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초제, 성장조절제, 한살림금지농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법정전염병의 방제를 위한 경우 협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예: 사과, 배 - 화상병) · 농약사용은 농약별로 적용대상 작물에만 사용해야 한다. · 한살림생산출하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품목별 작기 사용횟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개별농약의 사용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내여야 하며, 수확 전 최종 살포 시기는 기간의 2배수를 적용한다. · 한살림금지농약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의 적용을 확인할 시에는 농약의 상표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준으로 한다. · 도포제는 방제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한살림 금지농약성분으로 제조되거나 공업용 본드의 사용은 금지하며 도포제 사용내역도 영농일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초산비닐수지(polyvinyl acetate) 성분의 접착제를 이용하여 도포제를 자가 제조 사용가능하다. 제조 사용 시 제조에 들어간 재료 및 사용일 등을 영농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사과 유목(4년차까지)에 좀 벌레 방제를 위한 1회 방제는 방제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좀 벌레 방제용으로 등록된 농약일 것 → 방제력에 사용 농약을 등록 할 것 → 보식 필지의 경우 1m내 직접 분무를 통하여 비산을 방지 할 것 → 한살림 금지농약 제외 →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화학합성농약의 사용 할 시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사용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제계획에 없는 화학합성농약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한살림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한 이후 사용해야 한다. - 네오니코티노이드계통 농약은 방제력 내 3회까지 사용가능하다. - 계획된 방제계획 내에서 농사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농약 사용의 순서변경은 가능하다. - 1회방제시 농약을 혼합하여 살포할 경우, 살균제 1종 + 살충제 1종을 혼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생산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각각 2종을 넘지 못한다. - 살충제/살균제 분리사용은 각 2회까지 가능하다. (추가) - 수확 후 필지(나무)방제는 방제 횟수 내에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추가) 화학합성농약을 구입한 영수증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체 내에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미사용농약을 반품 했을 경우 반품영수증도 함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생산자가 동일품목 내에서 수확시기별(조, 중, 만생중)로 방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종별로 이격거리는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영농일지에 그 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부 칙 (세부사항 및 용어정리)

자주인증 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 및 용어를 설명한 내용으로서, 생산자는 다음 내용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경영 관리

- 자주인증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기본인적사항, 토양관리, 퇴비, 화학비료 사용계획, 농자재 사용계획, 공동체 관리 및 병행생산 시 구분관리 계획, 용수, 제초, 저장, 출하관련 계획, 필지 정보 및 오염원 관리 계획 등 (자주인증신청서 양식 참고)

2. 용수 관리

- 검사결과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 인 및 총 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천·호소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한다.
- 같은 수원의 검사를 인정하더라도 개별생산자는 해당기록을 복사하여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 토양 관리(화학비료, 퇴비)

- 토양시비처방서의 결과에 부족과 과잉이 심한 성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사, 연구하여야 하며 인증심사과정에서 문의 시 생산자는 관련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화학비료 사용량은 토양시비처방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분별 권장량을 화학비료 포장에 표기되어 있는 품목별 사용량 중의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량의 1/2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 오염원(관행재배 포장 등)으로부터 관개용수 유입이 발생 할 경우 해당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고 충분한 면적을 구분 관리해야 한다.

4. 필지 관리

- 이격거리란 과실(가지 끝)과 오염원과의 거리를 말한다.
- 차단막이 없다면 4m 이내에 포함된 나무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을 구분 출하해야 한다. 다만 두 번째 줄의 나무는 첫 번째 줄의 나무가 자연차단막으로 인정되어 구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차단막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 시설물로 오염원 차단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 구분관리란 기본적으로 ①해당 필지에 구분수확을 위한 표시가 있어야 하며, ②구분 출하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살림에 제출하고, ③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출하·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서명이 있는 확인서, 사진과 구매자의 연락처 등)를 제출하고 ④관련 사안을 영농일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차단막의 망은 오염원이 차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해야 한다.
- 차단막이 개폐형일 경우 관행필지 생산자와의 소통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개폐기록이 반드시 영농일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5. 화학합성농약사용

- 1회 방제란 동일 필지에 같은 종류의 농약이 48시간 내에 살포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비가 연속해서 온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농자재, 창고 관리

- 농약은(빈 병, 봉지 포함) 외부와 차단된 안전한 장소(보관함/캐비닛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별첨자료 4] 한살림 자주기준 : 토박이씨앗살림

한살림 토박이씨앗이란 한살림 생산자가 종자자립의 의미로 최소 10년 이상 자가채종으로 생산하면서 유전적 형질이 안정화 되어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토착화된 씨앗을 말한다.

구분	내 용
씨앗 기준	<p>① 씨앗의 유래가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이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토종작물자원보감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국립유전자원센터의 토종기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지자체 조례를 통해 조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토종연구단체(예: 흙살림 토종연구소, 토종씨드림 등)에서 유래된 종자로 확인된 경우 (생강, 마늘 등 영양번식 작물의 경우 지역 농업기술센터 및 보급소 종자 가능) - 다음의 조건을 갖추고 자주관리점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조건 - 10년 이상 자가채종됨이 이력으로 확인되는 경우 · 지역 조건 - 한살림생산자 또는 시군경계 안에서 재배된 경우 · 자가 채종 조건 - 본인, 공동체 구성원, 한살림토박이 생산자가 채종한 경우 · 기록 확인 - 영농일지 기록, 사진, 기타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 등 <p>② 자가 채종을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박이씨앗 생산자는 씨앗을 스스로 자가채종을 하여야 한다. (생강, 마늘 등 영양번식 작물은 권장사항) - 단, 씨앗 보관 중 부패 및 변질, 육묘실패 등 부득이한 경우 한살림 생산자나 토종관련단체 등에서 씨앗을 확보할 수는 있다. 육묘를 구입할 때에는 한살림 생산자 회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토박이 씨앗 살림 표시 기준	<p>① 토박이씨앗 표시는 다음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표시가 가능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앗의 유래가 한살림 토박이씨앗 기준에 적합하고, 자가채종 여부가 확인된 경우(영양번식은 이력확인) - 토박이씨앗물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물품인 경우 <p>② 교잡이 우려되는 작물은 다음의 조건으로 교잡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잡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일정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격리재배, 개화시기를 조정 재배, 별도의 구분된 시설재배도 가능하다. (교잡우려가 높은 품목 : 호밀, 수수, 옥수수, 메밀, 배추, 갯, 상추, 썩갓, 호박, 오이, 참외, 박, 수박, 동아, 고추, 가지, 토마토)
기타	<p>자가채종을 위해 토박이씨앗살림 생산자는 씨앗을 스스로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하여 한살림 생산자, 주변 생산자, 토종관련단체 등에서 가져올 수 있음. 단, 육묘로 가져와야 하는 경우는 한살림 내 생산자로 한정한다.</p>

[토박이씨앗살림 자주인증제도]

- 기존의 저농약 과실류에 한정되어 있던 자주인증제도에 토박이씨앗으로 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진행함. 품목은 농산물, 임산물로 한정하며 씨앗기준은 위의 기준과 동일함.
- 생산기준은 한살림 생산출하기준과 국가인증기준에 준용하여 심사함.(별도 세부기준 마련예정)
- 자주인증을 신청하려고하는 신규품목인 경우 품목별 2작기 전부터 토박이씨앗살림 자주인증을 신청해야 함.
- 자주인증 생산과정 점검은 약정을 받은 생산자와 품목에 한해서 진행함.
- 한살림연합의 2차례 이상 생산단계 점검을 받고 자주관리점검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함.

[별첨자료 5] 한살림금지농약

① 금지농약 목록(성분명 - ABC 순)

[2016년 개정]

구분	일반명	품목명	규제근거	비고
1	Abamectin	아바멕틴		
2	Acephate	아세페이트		
3	Aluminiumphosphide	알루미늄 포스파이드		
4	Amitraz	아미트라즈		
5	Azinphos-methyl	아진포스메틸		
6	Azocyclotin	아조사이클로틴		
7	Benomyl	베노밀		
8	Beta-cyfluthrin	베타사이플루트린	lb	
9	Bifenthrin	비펜트린		
10	Cadusafos	카두사포스	lb	
11	Captan	캡탄		
12	Carbaryl	카바릴		
13	Carbendazim	카벤다짐		
14	Carbofuran	카보퓨란	lb	
15	Chlorotalonil	클로로탈로닐	IARC	
16	Chlorpyrifos-methyl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7	Cyfluthrin	사이플루트린	lb	
18	Cyhexatin	사이헥사틴	PIC	
19	Cypermethrin	사이퍼메트린		
20	Daminozide	다미노자이드		
21	Diazinon	다이아지논		
22	Dichlorvos	디클로르보스	lb	
23	Edifenphos	에디펜포스		
24	Emamectin benzoate	에마멕틴벤조에이트	항생제	
25	Ethoprophos	에토프로포스		
26	Fenarimol	페나리몰		
27	Fenitrothion	페니트로티온	cat1	
28	Fenobucarb	페노뷰카브		
29	Fenpropathrin	펜프로파트린		
30	Fenthion	펜티온		
31	Folpet	폴펫		
32	Fonofos	포노포스		
33	Kasugamycin	가스가마이신		
34	Lepimectin	레피멕틴	항생제	
35	Malathion	말라티온		
36	Maleichydrazide	말릭하이드라자이드		
37	Mancozeb	만코제브		
38	Mecarbam	메카밤		
39	Methidathion	메티다티온		

구분	일반명	품목명	규제근거	비고
40	Methiocarb	메디오카רב	lb	
41	Methyl bromide	메틸브로마이드	고독성	
42	Metiram	메티람	cat1	
43	Oxin-copper	옥신코퍼		
44	Oxolinic acid	옥솔린산	항생제	
45	Oxytetracycline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	
46	Oxytetracycline calcium alkeyltrimethylammonium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칼슘 알킬트리메틸암모늄	항생제	
47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항생제	
48	Oxytetracycline dihydrate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다이하이드레이트	항생제	
49	Phorate	포레이트		
50	Phosphamidon	포스파미돈		
51	PolyoxinB	폴리옥신비		
52	PolyoxinD	폴리옥신디		
53	Prochloraz	프로클로라즈		
54	Pyridaphenthion	피리다펜티온	PAN	
55	Streptomycin	스트렙토마이신		
56	Streptomycin sulfate salt	스트렙토마이신 황산염		
57	Tebupirimfos	테부피림포스	la	
58	Tefluthrin	테플루트린	lb	
59	Tetrachlorvinphos	테트라클로르빈포스		
60	Terbufos	터부포스	la	
61	Tetradifon	테트라디폰		
62	Thiodicarb	티오디카רב		
63	Thiometon	티오메톤		
64	Thiophanate-methyl	티오파네이트메틸		
65	Thiram	티람		
66	Validamycin A	발리다마이신 에이	항생제	
67	Zetacypermethrin	제타사이퍼메트린	lb	

용어설명

- **la** : 국제보건기구(WHO) 급성독성물질 분류 맹독성
- **lb** : 국제보건기구(WHO) 급성독성물질 분류 고독성
- **cat1** : 유럽연합의 독성물질 분류에 의한 최소 1종의 생물군에서 내분비 독성이 밝혀진 물질
- **고독성** : 농촌진흥청 분류기준상의 고독성

② 금지농약 목록(상표명 - 가나다 순)

(주의) 아래 상표명은 금지농약 여부 확인 시 편의를 위해 나열한 것으로 실제 금지 농약 여부는 각 농약의 성분명과 금지농약성분을 비교 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일 2018년 4월]

ㄱ (40)	가벤다, 가스가민, 가스란, 가이던스, 가지란, 강심장, 강씨브, 강침탄, 갤럭시, 검투사, 게시판, 갤럭시, 경농바리신, 경농아시트, 경농아씨틴, 경농옥시동, 경농 탄, 경농피레스, 경농홀렛, 경농훼나리, 경탄, 고추탄, 골고루, 골드미, 골든벨, 골자비, 과채탄, 광살포, 광야, 곤샷, 곤케어, 곤타임, 균가드, 균대왕, 균마금, 균마기, 균마기골드, 균사마, 균엔터, 균지기, 그린통통, 근충탄, 금모아, 금바다, 금상, 금자탑, 기대찬, 기라성, 기본존, 기트칸, 깎지사이드, 깎지킬, 깨끄탄, 꿈땅
ㄴ (14)	나대로, 나도야, 나이코, 난초애, 내바테, 네이팜, 노린탄, 논가드, 논사우, 농용신, 농활탄, 뉴리더, 뉴상승이, 뉴증원균, 늘존
ㄷ (53)	다니톨, 다모아, 다물균, 다스린, 다아라, 다이젠엔, 다이렉스, 다이몬파스트, 다이센엠45, 다이센엠-45, 다이아톤, 다이젠엔, 다이진, 다이토나, 다지논, 다코닐, 다코닐에이스, 다코레이트, 다코스, 닥터코어, 닥터팜, 단단, 단비, 단한방, 달무리, 달인, 대몽, 대풍, 더마니, 더블킥, 데푸콘, 델란티, 델타포스, 도드미, 도미넥스, 도샤스, 도열균, 도포박사, 돌격대, 돌직구, 동방가벤다, 동방만코지, 동방바리문, 동방베노밀, 동방비피, 동방지오판, 동방카보, 동부포리캡탄, 동부훼나리, 동작그만, 두아줄, 드림팀, 디모스, 땅사, 독심
ㄹ (15)	라인업, 람보, 래버스오퍼티, 럭비, 럭비골드, 레딧고, 레인지, 레전드, 렐단, 로벡틴, 리나운, 리도다다센, 리도밀엠지, 리토참골드, 리모트, 리바이짓드, 리액션, 리치문, 리치원, 리치참골드
ㅁ (29)	마간엠비, 마니커, 마법사, 마이탁, 마크왕, 만능타, 만다발, 만수무강, 만시지탄, 만코지, 말뚝, 말라타, 맥스팜, 맨투맨, 머니업, 머판, 메가스타, 메가줄, 메가폰, 메가히트, 메이저, 멸땅충, 멸사리, 멸사충, 멸자비, 멸충탄, 멸프로, 명품탄, 모도우리, 모두나, 모두다, 모캡, 무름반점뚝, 무름탄, 무쇠팜, 무스탕, 무진장, 몬스타, 미드마, 미성살충탄, 미스터빅
ㅂ (37)	바로너, 바리문, 바이스로이드, 바이스타, 바태다, 박멸애, 반가운, 발래오, 발본색원, 밧사, 방범대, 방호벽, 배차엔진폼, 백문불여일용, 백작, 버클리, 버티맥, 번아웃, 베노레이트, 베노밀, 벤다밀, 벤레이트, 벤프로디온, 보람, 보호망, 볼리암-타고, 부라마이신, 부란카드, 부패왕, 불세출, 브리핑, 블루칸, 블루킬, 블루투스, 비상벨, 비수, 비온엠, 비천무, 비타지람, 비틀킹, 비펜스타, 빅맨, 빅샷, 빅야드, 빅캐년, 빗장
ㅅ (65)	사일런트, 사천왕, 살무사, 삼각편대, 삼공가벤다, 삼공농용신, 삼공베노람, 삼공베노밀, 삼공스포탁, 삼공지오판, 삼공 탄, 삼공홀렛, 삼총사, 상비군, 상승세, 새메프, 새비피, 새총, 샨리프, 샨크, 샨그리라, 서티스, 선문농용신, 선문이음애충, 선발진, 성보가벤다, 성보네, 성보만코지, 성보바리문, 성보비피, 성보싸이클린, 성보지오판, 성보크린, 성보탄저박사, 성보피레스, 세빈, 세이브, 세이퍼, 센다날, 셀빙, 슈퍼캡, 슈퍼펀치, 스머프, 스미치온, 스위퍼플러스, 스타마이신, 스타맥틴, 스타터, 스펙, 스포르곤, 스포탁, 스포탁골드, 스피드, 시

ㅅ (65)	니나, 시드크린, 시스템엠, 신기록, 신기록-D, 신농지오판, 신무기, 신세대, 신파마치온, 신호탄, 심마니, 심토 충, 싸이메트, 쓰■피아, 썬업, 썬캐치, 썬렌토, 썬일갑, 썬비고
ㅇ (76)	아그렙토, 아그로텍가벤다, 아그리마이신, 아끼미, 아라베스크, 아레토, 아리농용신, 아리다수진, 아리당차 라, 아리만코지, 아리미소진, 아리베노밀, 아리볍싸용, 아리비피, 아리에이블, 아리일꾼, 아리지오판, 아리타 로널, 아리타보, 아리피레스, 아무러, 아바멕킬, 아바에마, 아바킹, 아스캡, 아젠파워, 아트라텍엠비, 아파치, 아프로बाट사, 안티멕, 알뜨리, 알짜, 알칸스, 양코르, 에니원, 예마킹, 에이팜, 예코멕틴, 예피훅, 엑스타, 엔비도 스피드, 엠블런, 영일가벤다, 영일바이오 여일비피, 영일스마트, 영일엠비, 영일옥시동, 영일치람, 영일 탄, 오티머스, 오티바옵티, 옥소리, 옥싸이클린, 옥토, 옥토퍼스, 온사랑, 온천하, 올광, 올스타, 올웨이즈, 올커니, 올킹, 올타골드, 올타플러스, 올풍, 옹골진, 완승, 왕중왕, 용마루, 워록, 윈톱, 월드천, 위풍당당, 유도탄, 유망 주, 유원베노밀, 유원비나인, 응골로, 응애왕, 응애킹, 응애특급, 이글원, 이브린, 이비엠멀사이트, 이비엠물바 사리, 이비엠옥동이, 이지팜, 이차메, 인덱스, 인바이오농용신, 인바이오쓰■이트, 인바이오피레스, 인서트, 인스펙터, 일급탄, 일품, 임팩트
ㅈ (15)	적토마, 전담마크, 정통파, 제트팜, 젠토마이신, 젠토크, 젠토킬, 조은팜, 종자탄, 지오골드, 지오판, 직격탄, 진 디충, 질풍
차 (10)	차무로, 차세대, 차칸, 차트라, 참조네, 천하무적, 초우크, 총망치, 총비상, 총앤드, 총체포, 총투사, 치명타, 치 프너, 치호톱
ㅋ (23)	카벤디온, 카운타, 카테고리, 카핀다, 캐논볼, 캐피즈, 캡처, 커지엠, 케레스, 케이씨베노밀, 케이씨캡탄, 코다 이, 콜라보, 킥다운, 큐라텔, 큐멕틴, 크레타, 크로마이트, 크린히, 큰나락, 클라스, 킬마이, 킹스타, 킹팜, 킹팜 골드, 킹팜골드
ㅌ (23)	타로널, 타미나, 타미칸, 타스타, 타이젠, 타이틀, 탄자꼬, 탄자비, 탄저도사, 탄저왕, 탄제로, 탄클린, 탄탄, 탄 프로, 탐나라, 탐실, 태그충, 태왕, 테디온, 테라노바, 테라피, 토지탄, 토충탄, 톱신엠, 톱신편스트, 통타, 트리 플러스, 트립솔, 특충탄, 티로트리신
ㅍ (24)	파마치온, 파발마, 파워네트, 파워벨, 파워샷골드, 파워크린, 파인올킬, 파죽지세, 팔방미인, 팜한농바리신, 팜 한농베노밀, 팜한농옥시동, 팜한농지오판, 팜한농캡탄, 팜한농포리옥신, 팜한농프로라츠, 페로팜, 포룸만, 포리동, 포리람, 포스, 포커스, 폴리옌골드, 푸레스, 푸르른, 푸른솔, 풀세트, 풍년만세, 풍성탄, 풍요론, 퓨리, 프로클레임, 플라잉, 피레탄, 필링업, 필사충, 필충탄
ㅎ (22)	하이멕틴, 하이바리신, 하이엑스, 하이원, 하이지오판, 하이킹, 하이페론, 한누네, 한소네골드, 한아름, 한우 물, 항공스타, 해마지, 해숨비피, 해숨피레스, 해피존, 호위대, 흑제로, 황제카보, 황제탄, 후라단, 후려니, 휘파 람, 흑기사, 흑룡, 희새탄, 희소식, 히든카드, 히든탄, 히어로, 히트런

④ 참고자료

* PIC(Prior Informed Consent) : 협약에 참가한 당사자 간에 금지, 제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사전 통보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규정한 협약(로테르담 협약이라고도 함)

* PAN(국제농약행동망) : 약 90개국 600여 개의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체적인 해충관리, 유기영농, 국제적으로 판매 및 사용금지 농약에 대한 자료수집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단체명	적용부분	비고
WHO(세계보건기구)	급성독성 중 맹독성, 고독성으로 분류된 성분	
EU(유럽연합)	내분비계 장애 물질 중 CAT1(최소 1종의 생물군에서 내분비 독성이 밝혀진 물질)로 분류된 성분	
IARC(국제암연구소)	발암성물질분류 중 Group2B(제한적 인간대상 연구자료와 불충분한 동물실험결과가 있는 경우)에 포함된 경우	
PIC(로테르담협약)	사전통보승인절차에 따라야 하는 물질목록	
EPA(미 환경보호청)	Carcinogenic to humans 까지의 농약 물질	
PAN(국제농약행동망)	PAN**으로 보고된 점차적 철수단계에 있는 한국의 농약목록	
농촌진흥청(한국)	품목 등록이 제한되는 농약	